



# 농장 근로자 안내 사항

최저 임금 시간당 요율 유효 기한: 2024년 1월 1일 - 2024년 12월 31일

## 뉴욕 시

모든 고용주

최저 임금

**\$16.00**

56시간 이후 초과 근무 \$24.00\*

## Long Is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

최저 임금 **\$16.00**

56시간 이후 초과 근무 \$24.00\*

##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

최저 임금 **\$15.00**

56시간 이후 초과 근무 \$22.50\*

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

[www.labor.ny.gov/minimumwage](http://www.labor.ny.gov/minimumwage)를 방문하거나 다음 번호로

**(888) 469-7365.**

전화하십시오:

위에 나오는 최저 임금 요율 아래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크레딧 및 수당:

- **식사 및 숙박** - 고용주는 다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한 귀하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숙박에 대해 제한된 금액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요율 및 요구사항은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임금 주문 및 요약에 나옵니다.

예외: 귀하가 이주 계절 근로자인 경우 고용주는 귀하의 임금에서 숙박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위에 나오는 최저 임금 요율 외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추가 급여:

- **초과 근무** -귀하는 주 56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 및/또는 쉬는 날에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.5배(위의 초과 근무 수당 이상)를 지급받아야 합니다.
- **유니폼 유지보수** -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하는 경우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간 요율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.
- **연방법** - 귀하가 연방 공정노동 표준법(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)의 적용을 받는 직원인 경우 주법에 따라,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더 높은 연방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.